## [별표 14] <개정 2005.5.26>

## 판매취급소의 위치·구조 및 설비의 기준(제38조관련)

## I. 판매취급소의 기준

- 1.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 (이하 "제1종 판매취급소"라 한다)의 위치·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  - 가.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
  - 나. 제1종 판매취급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"위험물 판매취급소(제1종)"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동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- 다.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,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
  - 라.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보를 불연재료 로 하고,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을 불연재료로 할 것
  - 마.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,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
  - 바.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 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
  - 사.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
  - 아.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할 것
  - 자.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다음에 의할 것
    - 1) 바닥면적은 6m² 이상 15m² 이하로 할 것
    - 2)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
    - 3)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
    - 4)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
    - 5)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.1m 이상으로 할 것
    - 6)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

- 2.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 (이하 "제2종 판매취급소"라 한다)의 위치·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1호가 목·나목 및 사목 내지 자목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.
  - 가.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·기둥·바닥 및 보를 내화 구조로 하고,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연재료로 하며, 판매취급소 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
  - 나.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 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는 동시에 상층으로의 연소를 방지하 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,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
  - 다.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중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 에 한하여 창을 두되, 당해 창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 할 것
  - 라.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. 다만, 당해 부분중 연소의 우려가 있는 벽 또는 창의 부분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 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.